

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(추가 모집)

임업과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한 「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.

2026년 6월 10일

원 주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[추가 모집]
- 신청기간: 2026. 6. 11.(목) ~ 6. 15.(월) 18:00
 - * 잔여 예산 소진 시 마감
- 신청장소: 원주시청 산림과
- 지원내용: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
 - ※ 지원 인원 및 예산에 따라 가구당 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
- 지급방법: 연 1회(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)

2. 지원자격

- 2026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기본요건과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기본요건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(임업분야)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
- 세부요건
 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.
 - 농어업경영체(임업분야)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.
- 중복신청 불가
 - 임업·농업·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

3. 지원 제외대상

*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1)~10)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

- 1) 보조금 신청 2년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

유의사항

-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(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)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
- 전년도 임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,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으로 간주 (단, 부부 중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 제외)
※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. 1.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기준 2년 전 연도 자료 활용(신청 시기인 1~2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불가)

- 2) 신청 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임업인
- 3) 신청 전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임업인
- 4)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또는 임대·대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
- 5)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
- 6)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
- 7)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
- 8) 「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,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
- 9) 수당 지급일까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
- 10) 농업인수당, 어업인수당 중복으로 지급 받은 자

4. 지급 중단 및 반환

○ 보조금 지급 중단

- 1)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- 2) 지급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

3) 지급대상자가 임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

* 단,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체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

4)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5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*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, 임업인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

○ 보조금 반환 및 지급 제한

1)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⇒ 보조금 반환

2)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⇒ 보조금 반환 및 지급 제한

5. 제출서류 및 문의처

< 제출 서류 >

- 임업인수당 신청서
-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임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
- 농어업·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
- 가족관계증명서(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)
- 임업경영체등록(변경)확인서

○ 문의처

- 원주시청 산림과(☎737-3133)

6. 붙임

○ 임업인수당 신청서식 1부.

○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. 끝.